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구사업 위탁기관 유형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신설(안 제5조의2)

- 1)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지역사랑상품권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지역사랑상품권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u> <u>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u> <u>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u> <u>3. 국공립연구기관</u> <u>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u> <u>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u>

	<u>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3